

# 2024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4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1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12.15.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1. 개요

(목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지원규모) 1,202억원

## 2.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li><li>※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포함</li></ul>
②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불가)</li><li>- <b>방법 1</b>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차차기 계획기간 사전 할당 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li><li>- <b>방법 2</b>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 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 B업체는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li></ul>

## □ 지원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b>중소·중견기업</b></li> <li>※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중 <b>중소·중견기업</b></li> </ul>
②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사업자(A)는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b>민간기업(대기업 포함)</b></li> <li>- <b>방법 1</b> 부사업자(B)는 <b>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b></li> <li>- <b>방법 2</b> 부사업자(B)는 <b>할당대상업체 중 중소기업</b></li> </ul>

※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유상할당 대기업**’은 3차 공고부터 지원 가능함. 단,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업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li> <li>·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시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li> </ul> </li> <li>·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상할당 대기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상할당 업종에 해당하는 대기업</li> </ul> </li> </ul>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업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해서 이미 동일기관 또는 타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li> <li>· 신청업체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li> <li>· 신청업체 또는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li> <li>· 신청업체가 휴·폐업중인 경우</li> <li>· 신청업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li> <li>· 기타 환경부장관 및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li> </ul>
---

### 3.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사업유형별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단, 설비투자비는 지원한도(300억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구 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규모	1,202 억원
보 조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li> <li>※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포함</li> <li>○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50%</li> </ul>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동일사업 최대 2년)</li> <li>※ 업체별 10개 사업장 이내 지원</li> <li>※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의 경우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동일사업 최대 3년) 지원(지원한도 내에서 연차별 배분)</li> </ul>

※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유상할당 대기업**’은 3차 공고부터 지원 가능함. 단,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총 지원예산 규모 및 사업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다년도 사업**’\*은 총 사업기간 내 연도별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 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금액 결정

※ 다년도 사업(2~3차 연도) 신청업체는 전년도 사업을 완료한 후 차년도 사업을 신청해야 함

○ 설비투자비 지원범위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지원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건축공사 포함), 기존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계측설비는 지원설비의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을 위해 운영기관이 인정한 필수 계측설비(신규·교체)에 한해 지원

\*\*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내에서 해당 사업의 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원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신청업체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사업장에서 사용한 최근 2년 이내의 전력량, 열사용량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원설비

사 업 명	지 원 설 비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로 투자회수기간* 2년 이상의 설비</li> <li>◦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⑤ 연료전환'에 해당하는 설비</li> </ul>
②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첨 1] 지원설비 목록의 설비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의 적용이 가능한 설비</li> </ul>

\* '투자회수기간'은 설비투자비를 연간 예상되는 절감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절감액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인해 절감된 에너지(전력, 연료 등)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 판매 가능 수익액을 더하여 산정하나, 다만, 에너지 단가가 높은 저탄소·탄소무배출 연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료 전환으로 증가된 에너지 비용은 절감액 산정에서 제외

※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판매 가능 수익액)은 11,120원(지표배출권 KAU22 장내 거래 평균가격에서 10원 이하 절사)으로 하며, 에너지 비용의 단가는 신청업체의 직전년도 평균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증빙자료 제출

## 4. 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절차별 세부내용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업체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사전검토	운영기관	-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추가보완자료 요청 -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가능
↓		
사업신청서 평가	위원회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업체 평가·선정
↓		
선정결과 통지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 ↔ 지원업체	- 지원업체에게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안내사항 송부 - 협약체결(서면, 대면, 생략가능) - 지원업체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		
계약체결 및 설비설치	지원업체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제출 및 선금금 신청(70% 이내)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업체	- 설비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 완료서 제출 - 선금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운영기관	- 설치 확인 현장점검 및 감축량 검토 -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		
사후관리(3년간)	지원업체	- 매년 감축실적보고서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처분제한(2년간)	지원업체	- 설비 처분의 제한기간 동안에 설치 설비 관리 및 관련서류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5.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1회차, 2023.12.15.(금) ~ 2023.12.29.(금)

구분	접수기간	선정통보(예정)일
1회차	'23.12.15.(금) ~ '23.12.29.(금), 16:00	2월 4주
2회차 이후 공고	예산 전부 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공고 예정이나 정확한 일정은 지원업체수 및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추후 공지 예정	추후 공지 예정

※ 선정 통보일은 지원 현황 및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 단위) 개별 사업장의 설비군 별로 각각 신청

○ (신청서 작성) 총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 제출(한글, Excel)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별지 제4-1호 서식(첨부3~5 양식 사용)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별지 제4-2호 서식(첨부6~8 양식 사용)

※ e나라도움([www.gosims.go.kr](http://www.gosims.go.kr)) 사업신청 절차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선택(2024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해당 회차 공고)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 6. 선정 및 평가절차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사업 평가·심의 → 협약 체결

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검토	평가·심의	협약 체결
사업신청서 접수 (신청업체)	감축량 산정, 사후관리계획 등 검토 (공단)	심의위원회 평가, 지원업체 선정 (공단)	지원사업 협약 체결 (공단·지원업체)

###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지침 [부록2] 사업신청서 평가 및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 계획(30점), 사업효과(50점), 정책효과(20점), 가·감점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심의위원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신청업체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 요청
- (평가방법) 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장(업체)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 지원 우선순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지

## 7. 유의사항

### ①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업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물품, 용역 및 공사계약 체결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변경·취소
- ☑ (견적서 제출) 신청설비에 대해 계약 건별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하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 가격으로 제출(증빙서류 첨부)

#### ▶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

- ☑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 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협약 후 사업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 ☑ 사업신청 시 발전설비 용량, 연료 수급계획, 전력 판매계획, 열판매 단가 등 관련 자료 포함하여 제출

####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외부사업 방법론 등을 적용한 감축량 산정 적용방법, 사업경계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

## ② 사업 평가 시 가·감점 기준

### ▶ 가점 적용기준

- ☑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개년도 공단에서 실시한 컨설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상 감축량을 확인한 설비는 가점 5점(수행 완료)을 적용하고, 공고 연도 컨설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가점 2점(수행 예정) 적용
- ☑ (일자리 창출) '22.11.23. 이후 신청설비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채용 공고문, 재직 증명서 및 관련 업무 확인서류 등) 제출 시 가점 부여
- ☑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 전년도 수요조사에 참여한 업체에게 가점 부여
-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여부) 공고 연도 이전 최근 2개년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환경부) [부록3] 대상 제품별 CN코드에 따른 EU 품목별 수출항목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제출 시 가점 부여

### ▶ 감점 적용기준

- ☑ (감축량을 미달성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개년도 사후관리 대상 업체에 해당하여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계획 대비 95% 또는 90% 미만인 경우 가장 낮은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을 적용하며, 2년 연속 95%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신규사업 참여 제한
- ☑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이월된 업체)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개년도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이 부진(이월액 발생)한 업체에 대해 감점 적용. 다만, 지원 연도 내 설치완료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③ 사업 운영 시 유의사항

- ▶ 계약 종류(물품, 용역 및 공사)에 따라 기준 금액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이용 또는 조달청 위탁 의무를 가짐
- ▶ 사업계획 변경내용 발생 시, 신청 必 → 사안에 따라, 운영기관의 확정/승인 실시
  - ☑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설비내역, 금액, 사업기간, 설치위치 등)이 생겼을 경우
  - ☑ 비목별 배분된 금액을 30% 이상 변경할 경우
  - ☑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경우
- ▶ 설치 설비에 대해 3년간 사후관리(감축실적보고서) 필수
  - ☑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감축실적보고서 매년 제출(차년도 1월 말까지)
  - ☑ 예상감축량 대비 감축량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자료 제출 필요(사진 포함)
- ▶ 설비 설치 처분의 제한
  - ☑ 설치완료 보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축설비를 타인에게 양도, 처분하거나, 폐기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 처리 승인 신청서' 제출 후 승인 필요
  - ☑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가능



## 8. 기타사항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 지침」을 따름.
-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컨설팅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동 보조사업 이외에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동 사업 신청 및 접수는 2차 공고 시 진행할 예정임.

## 9. 문의처

- (사업문의) 사업 신청, 선정 및 운영 안내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 ☎ 032-590-5616~9, 5649, 5650
- e나라도움 사용문의 : 회원가입, 사업신청, 시스템 매뉴얼 안내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객센터 ☎ 1670-9595
- 조달청(나라장터) 이용문의 : 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고객센터 ☎ 1588-0800

- ※ 별첨 1 : 지원설비 목록 1부.
- 별첨 2 : 사업신청서 평가기준 1부.
- 별첨 3 : 지원업체 계약 기준 1부. 끝.

## [별첨 1] 지원설비 목록

지 원 설 비		지 원 범 위
① 탄소무배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설비</li> </ul>
공정 설비	②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또는 폐압)을 회수하여 열 또는 에너지 원으로 활용하는 설비</li> <li><b>예시</b> 폐열회수 보일러, 폐압 터빈발전, 열교환기, 공정 부생가스 이용장치, 증기 재압축장치, 응축수 회수 등</li> </ul>
	③ 폐기물 열분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가스, 유류)하기 위한 설비</li> </ul>
	④ 탄소포집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설비</li> <li>※ 조직경계 내의 포집·이송설비(이용설비는 제외)를 지원하며, 이송설비는 포집설비와 함께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li> </ul>
	⑤ 연료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변경하기 위한 연료전환 설비</li> <li><b>예시</b> 보일러, 버너, 로, 건조설비 등</li> <li>※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연료전환 포함</li> </ul>
	⑥ 불소가스 저감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산업 등에서 열, 플라즈마 등을 활용하여 FC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li> </ul>
	⑦ 기타 공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⑥에 해당하지 않으나 온실가스 배출공정의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설비</li> <li>※ 공정설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⑧~⑩으로 지원</li> </ul>
	전력 · 연료 절감 설비	⑧ 인버터
⑨ 인버터제어형 압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체를 압축시켜 압력을 높이는 설비로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li> </ul>
⑩ 고효율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설비의 개선을 통해 효율이 향상되거나 기존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li> <li><b>예시</b> 교반기, 모터, 버너, 보일러, 터보압축기, 펌프, LED 조명 등</li> <li>※ 단순 노후제품 교체 및 환경개선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i> </ul>
⑪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li> </ul>

※ 지원설비 중 태양광, 폐열 등을 이용한 발전설비 또는 열 생산설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열사용량 등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생산된 전력 및 열은 소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감축결과보고서 제출시 전기 발전량, 구매량, 판매량 등 증빙자료 제출)

## [별첨 2] 사업신청서 평가기준

### 1. 단년도 사업 및 다년도 사업(1차 연도)

평가 항목	평 가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계획 (30)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15) - 목적, 설비 적합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 수행 체계 및 사업자 역할의 명확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5	12	9	6	3	
	②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산출과정 정확성, 신뢰성, 보수적 적용	10	8	6	4	2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유지보수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① 온실가스 감축률 - {사업 전 배출량(tCO <sub>2</sub> /년) - 사업 후 배출량(tCO <sub>2</sub> /년)} ÷ 사업 전 배출량(tCO <sub>2</sub> /년) × 100	감축률 감축효과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200 이상	50	47	44	41	38
	150 이상	47	44	41	38	35	
	②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 <sub>2</sub> /년) ÷ 설비투자비(억원)	100 이상	44	41	38	35	32
		50 이상	41	38	35	32	29
		50 미만	38	35	32	29	26
정책 효과 (20)	① 기업규모별 점수(10점) ※ 상생프로그램은 부사업자(B업체)에 해당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시대상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10	7	4	1			
② 감축효과를 고려한 설비별 점수(10점)	탄소무배출설비	공정설비	개선	전력연료 절감 설비			
10	8	6					
가점 (11)	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5)	컨설팅 수행 완료	컨설팅 예정				
	5	2					
	② 일자리 창출 여부(3)	인력 채용 완료	인력 채용 예정				
	3	1					
	③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해당 여부(1)	특별지구 해당	특별지구 미해당				
	1	-					
④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1)	참여	미참여					
1	-						
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1)	1	-					
감점 (△7)	①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미달성 업체	95% 미만	90% 미만	2년 연속 미달성			
		△3	△5	1년간 신규사업 참여 제한			
	②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2			

## 2. 다년도 사업(2~3차 연도)

평가 항목	평 가지 표	평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사업 실적 및 계획 (30)	①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의 타당성(15) - 전년도 사업계획 대비 달성도 -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5	12	9	6	3	
	② 감축량 산출근거의 타당성(10) - 감축목표 유지 여부 및 산출 정확성, 신뢰성	10	8	6	4	2	
	③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5) - 계측설비 설치계획, 감축량 측정계획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방법, 유지보수	5	4	3	2	1	
사업 효과 (50)	① 온실가스 감축률 - {사업 전 배출량(tCO <sub>2</sub> /년) - 사업 후 배출량(tCO <sub>2</sub> /년)} ÷ 사업 전 배출량(tCO <sub>2</sub> /년) × 100	감축률 감축효과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200 이상	50	47	44	41	38
	② 온실가스 감축효과 - 감축량(tCO <sub>2</sub> /년) ÷ 설비투자비(억원)	150 이상	47	44	41	38	35
		100 이상	44	41	38	35	32
		50 이상	41	38	35	32	29
50 미만	38	35	32	29	26		
정책 효과 (20)	① 기업규모별 점수(10점) ※ 상생프로그램은 부사업자(B업체)에 해당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시대상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10	7	4	1		
	② 감축효과를 고려한 설비별 점수(10점)	탄소무배출설비	공정설비	개선	전력	연료 절감 설비	
		10	8		6		
가점 (11)	① 탄소중립 컨설팅 수행 여부(5)	컨설팅 수행 완료	컨설팅 예정				
		5	2				
	② 일자리 창출 여부(3)	인력 채용 완료	인력 채용 예정				
		3	1				
	③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해당 여부(1)	특별지구 해당	특별지구 미해당				
		1	-				
④ 전년도 수요조사 참여 여부(1)	참여	미참여					
	1	-					
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1)	1	-					
감점 (△7)	① 과거 지원사업에서의 감축량이 계획 대비 미달성 업체	95% 미만	90% 미만	2년 연속 미달성			
		△3	△5	1년간 신규사업 참여 제한			
	② 과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하여 사업비가 이월된 업체				△2		

### [별첨 3] 지원업체 계약 기준

-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 체결

구 분		자체조달*	중앙조달**
물품, 용역	○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
공사	종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전문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X
	기 타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X

\* 자체조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중앙조달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다만,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발전소 건설공사는 ‘고난도 공종 및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조달청에서의 검토 등이 어려워 자체조달 방식으로 계약 가능(사업별로 입찰 시 조달청 확인 필요)

- 지원업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에 따라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